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7월 10일, 조승환 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4. 8. 2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9. 4.)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조승환 의원)

현행법은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선원의 취업알선 및 실업대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등으로 선원인력의 감소추세와 고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 선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실질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인력의 유입을 꾀하여 선원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선영)

최근 선원인력 현황을 보면, 외국인 선원 대비 국적선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선원의 고령화지수가 급속히 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근무환경 및 임금의 상대적 감소 등을 이유로 신규 인력의 5년내 이직률이 약 78% 수준에 이르는 등 선원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국적선원 감소 문제는 외국인 선원의 승선인원을 제한하고 있는 「국제선박등록법」으로 인하여 외항상선 운항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7월 국적선원 신규 유입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근로조건 개선, 소득·복지 증진, 교육훈련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수립·

발표한 바 있음.

-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에는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해 공제제도를 신설하고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확대하는 등 각종 공제·세제 혜택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업무에 실질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정부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선원인력의 감소 및 고령화 추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다만, 현행법의 제108조(선원의 직업안정업무) 제1항제1호·제2호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의 취업 알선·모집·지원, 등록과 실업대책 등에 관한 “선원인력 확보와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선원의 처우개선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조제목을 수정(선원의 직업안정 업무→ 선원의 인력확보 및 직업안정업무)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 조경태 위원)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

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